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0 - 38 - 176호

안 건 명 개인정보 유출신고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의 결 일 2020. 6. 24.

주 문

1.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할 것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것

다.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

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할 것

2. 피심인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6,900,000원

나. 과 태 료 : 13,0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마.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 유

Ⅰ. 기초 사실

1. (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온라인 교육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를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대표이사	설립일자	자본금	주요서비스	종업원 수

〈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평균
전체 매출				
관련 매출				
관련없는 매출				

※ 자료 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2.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에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피심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피심인의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 하였고, 피심인에 대한 현장조사(2019. 4. 4.)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3. 피심인은 온라인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를

운영하면서, 2019. 4. 2.기준 건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 피심인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 >

구분	항목	수집일	건수
회원정보 (유효회원)	B2C [필수] 아이디, 이름, 비밀번호, 본인인증(핸드폰, 이메일 택1) [선택] 성별, 생년월일, 나이, 이메일, 지역, 핸드폰번호, SNS인증값, 종교 기수, 직업, 결혼여부, 자녀여부, 자녀수 등		건
	B2B [필수] 핸드폰번호, 이메일, 성별, 이름 [선택] 회사사번, 주소, 우편번호, 생년월일, 생일 등		건
(휴면회원)	B2C 상동		건
	B2B 상동		건
총계			건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개인정보 유출 경과 및 대응

- 2019.3.25. 16:25 (고객사)로부터 자사 임직원 개인정보를 포함한 Excel 파일이 구글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삭제 요청 메일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인지
- 2019.3.25. 17:00 시스템 내 개인정보 노출 파일 삭제 및 취약점 조치 완료
- 2019.3.25. 17:05 구글에 노출 URL에 대한 캐시 파일 및 첨부 파일 삭제 요청
- 2019.3.25. 17:08 에 대한 robot.txt 설정
- 2019.3.26. 15:34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
- 2019.3.26. 17:04 개인정보 노출 대상(60명)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및 홈페이지 유출 안내 완료

2) 개인정보 유출 규모

4. 피심인의 B2B 가입 회원정보(회사명, 아이디, 이름, 이메일, 핸드폰번호, 강의시작일, 강의종료일, 강의일수, 지급 상품코드, 우편번호, 주소 등) 60건이 유출되었다.

<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현황 >

구 분	유 출 항 목	건 수
B2B 가입 회원정보	회사명, 아이디, 이름, 이메일, 핸드폰번호, 강의시작일, 강의종료일, 지급 상품코드, 우편번호, 주소 등	60건

3) 유출 경로

5. 피심인이 운영 중인 데이터 서버 에 디렉토리리스팅* 취약점이 존재하여, 2018.11.26부터 2019.3.25까지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다운로드** 되었다.

* 디렉토리리스팅 : 취약점이 존재하는 서버 주소를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는 경우 서버 내 디렉토리 및 파일 목록이 노출되는 취약점

** 59.23. (한국), 66.249. (미국) 등 28개의 IP로부터 개인정보 파일이 50회 다운로드 됨.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사실 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1) 피심인이 운영 중인 데이터 서버 가 2018.11.26. 이전부터 서버 내 디렉토리와 특정 파일이 노출 되는 취약점으로 인해 구글 검색엔진에 개인정보가 노출 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 페이지 에 대한 사용자 접속 제한을 위해서 인트라넷에서 권한, IP를 통해 접속 통제를 하고 있으나, '19. 4. 4. 점검 기간 중에 확인 결과 로그아웃 시에 이미 발급된 세션정보를 서버에서 삭제하지 않아, 기 생성된 세션정보를 이용하여 비인가 된 IP에서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되어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의 보관 및 점검을 소홀히 한 행위

6.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에 대해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있으나, 관리계정, 접속일시, 접속자 정보, 수행업무 등이 기록되어야 하나, 접속자 정보(IP), 수행업무 항목을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은 행위

7. 피심인은 B2B회원( ) 중 마지막 로그인 일시가 2019. 4. 4. 기준으로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은 B2B회원 1,160명 대해서 휴면 회원으로 별도 분리·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8.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 11. 13.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안) 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19. 11. 25.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제2호)',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제3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9.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5호)' 등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감독(제1호)'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0.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구)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3호, 이하 '고시')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제10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1. 고시 제5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2.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4조제9항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보호조치를 하되, 보안대책 마련, 보안기술 마련,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권한 설정 등의 조치를 통해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 통제 등에 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제4조제10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해설하며,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업무용 컴퓨터 등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대 접속시간이 경과하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이 완전히 차단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또한 최대 접속시간은 최소한(통상 10~30분 이내)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시간 접속이 필요할 때에는 접속시간 등 그 기록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13. 고시 제5조제1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개인정보의 조회, 정정, 다운로드, 삭제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탐지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1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불법적인 접속 및 운영, 비정상적인 행위 등 이상 유무의 확인을 위해 ⅰ)식별자(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ID 등), ⅱ)접속일시(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시점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점) 〈년-월-일, 시:분:초〉, ⅲ)접속지(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

의 컴퓨터 또는 서버의 IP 주소 등), ⅳ)수행업무(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취급자가 처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등을 포함하는 접속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5.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법 제29조제2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6. 「정보통신망법 해설서」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에 대해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개인정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고,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에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로그' 등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용약관 등을 통해 그 적용 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설하고 있다.

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 접근통제{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1)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피심인이 인터넷 홈페이지 에 디렉토리 인덱싱 웹 취약점을 방치하여 취급중이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노출)되도록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5호, 고시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2) (최대 접속시간) 피심인의 관리자 페이지 에서 개인정보취급자가 로그아웃 시에 세션정보를 서버에서 삭제하지 않아, 기 생성된 세션정보를 이용하여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5호, 고시 제4조제10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의 보관 및 점검{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을 소홀히 한 행위

17. 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에 작성 시 접속자 정보(IP), 수행업무 항목을 누락하여 기록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 고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은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중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18. 피심인이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1,160건을 파기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사업자 명	위반 내용	법령 근거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접근 통제	§28①2호	§15②5호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고시§4⑨)
	접근 통제	§28①2호	§15②5호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시간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고시§4⑩)
	접속 기록	§28①3호	§15③1호	피심인이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작성 시 접속자 정보(IP), 수행업무 항목을 누락하여 기록하지 않은 행위(고시§5①)
	유효 기간	§29②	§16②	1년간 로그인 기록이 없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 분리·보관하지 않은 행위

Ⅳ.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할 것 2)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것 3)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할 것

나. 피심인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19.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V. 과징금 부과

20. 피심인은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유출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조치(제28조제1항)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1.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제1항과 제4항 [별표 8] (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산정절차)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1. 과징금 상한액 및 기준금액

가. 과징금 상한액

22.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64조3의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

신서비스의 직전 3개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 · 중과실 여부

23.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8]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4. 이에 따를 때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피심인에게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중대성의 판단

25.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6.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조항은, 위반행위의 결과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중 모두에 해당할 때에는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할 때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7. 이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로 직접적인 이득은 취하지 않았다는 점,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3) 기준금액 산출

28. 피심인의 정보통신부문 매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로 하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원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8] 2. 가. 1)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1천분의 21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원으로 한다.

< 피심인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평 균
관련 매출액				

※ 자료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작성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8] 2. 가. 1)에 따른 부과기준율>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보통 위반행위	1천분의 15

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29.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심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1년 이내 '단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30. 최근 3년간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31.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2. 이에 따를 때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1,730,127원을 감경한다.

2. 과징금의 결정

33.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별표 8] 2. 가. 1)(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원이나, 최종 과징금 산출액이 1억원 이하에 해당하여 십만원 미만을 절사한 6,900,000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과징금 산출내역>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	**최종 과징금***
천원	필수적 가중 없음 필수적 감경 (50%, 천원) → 천원	추가적 가중 없음 추가적 감경 (20%, 천원) → 천원	**690만원**

*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실무요령'에 따라 최종 과징금 산출액이 1억원 미만은 십만원 미만 절사, 1억원 이상은 백만원 미만 절사함

Ⅵ. 과태료 부과

34.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제1항,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제2항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 9] 및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35.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인 1,000만원을 각 적용한다.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너. 법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3호	1,000	2,000	3,000
더. 법 제29조제2항(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76조 제1항제4호	1,000	2,000	3,0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 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

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6.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행위는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30%인 300만원을 가중한다.

< 과태료 부과지침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 >

기준	가중사유	가중비율
위반의 정도	나.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30% 이내
	제3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74조 별표 9 제2호 너목	
	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하지 않은 경우	
	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	
	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라.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마.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 환경, ▲사업규모와 자금사정, ▲개인(위치)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7. 이에 따라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및 제29

조제2항 위반 과태료에 대해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각 감경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조문	기준금액	가중	감경	최종 과태료
§28①2·3호	1,000만원	300만원	500만원	**800만원**
§29②	1,000만원	없음	500만원	**500만원**
계				**1,300만원**

다. 최종 과태료

38.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13,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Ⅶ. 결론

39.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시정명령), 제64조의3제1항제6호(과징금) 및 제76조제1항(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40.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1.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2.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6월 24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표 철 수 (인)

위 원 허 욱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위 원 안 형 환 (인)